

# 도시텃밭 운영규약

제1조(목적): 규약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성한 관악구 친환경 도시텃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: 이 규약은 관악구 친환경 도시텃밭 부지에 조성한 체험 학습장과 부대시설의 관리 ·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준수의무): 이용자 등은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과 원활한 학습장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규약의 효력): 이 규약은 텃밭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용기간): 친환경 도시텃밭 사용기간은 개시일로부터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운영하며, 이용시간은 해돋이부터 해넘이까지 운영한다.

## 제6조(이용자 준수사항)

- ① 도시텃밭 내에서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, 비닐(멀칭) 등도 하지 않는 친환경 경작을 한다.
- ② 도시텃밭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작물을 식재하거나 재배하지 않고, 다음 사람을 위해 주변을 정리한다.
- ③ 분양받은 구획의 섞여 있는 돌 및 장애물 고르기 등 경지 정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이웃 텃밭에 피해가 없도록 주1회 이상 도시텃밭을 방문하여 작물 및 잡초 등을 관리하고, 1개월 이상 경작하지 못할 경우, 관악구 공원녹지과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도시텃밭을 임의로 훼손 · 변경하지 않으며, 제3자에 양도하거나 임대 · 교환 하지 않는다.

※ 배정받은 텃밭 구획을 넘어 자투리 고랑, 통로까지 확장하여 경작하지 않으며 구획표시를 위한 나무덧댐, 돌담쌓기 등을 하지 않는다.

- ⑥ 도시텃밭 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, 통로 내 개인물건 비치 등 공공 질서

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- ⑦ 도시텃밭 내에서는 취사나 조리를 하지 않으며,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고 텃밭 이용 시 발생된 쓰레기는 본인 집으로 되가져간다.
- ⑧ 도시텃밭은 공원구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없으므로,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세제나 비누 등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.
- ⑨ 타인의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수확하지 않는다.
- ⑩ 토지가 아닌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관리의 의무를 다한다.
- ⑪ 개인의 실수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.
- ⑫ 도시텃밭 내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깨끗하게 이용하여야 한다.
- ⑬ 주차장이 없으므로 차량이용은 제한한다.(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)
- ⑭ 본인 텃밭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경작물 도난 사건의 방지를 위하여 텃밭 실명제 실시에 동의한다.
- ⑮ 이외의 별도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준수하며, 도시텃밭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제공받는데 동의한다.

제7조 (사용제한)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.

- ① 1차, 2차: 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(부착 기간 각5일)
- ② 3차 : 경작금지 안내문 부착(1일) 후 즉시 강제 제거 및 사용허가 취소  
※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사용허가 취소 시 이용료는 반납하지 않는다.

제8조(우수사례 선정): 구 조례 제17조에 의거 선정된 우수사례자(혹은 단체)는 한차례에 한하여 다음해 추첨없이 도시텃밭 이용할 수 있다. (분양자의 5% 이내)

제9조(적용시점) 이 규약은 텃밭 개장 시부터 적용된다.

위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24년 3월 일

텃밭번호: \_\_\_\_\_ 성명 : \_\_\_\_\_ 서명 또는 (인)